



2003년 축산물 위생 주요 정책방향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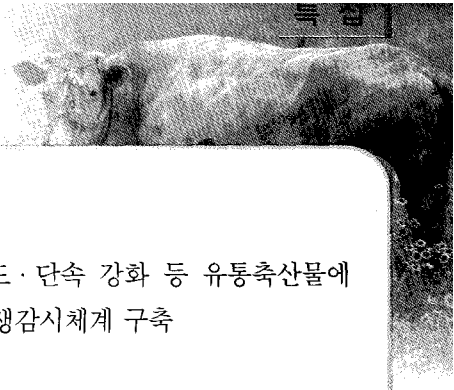
글을 시작하며

돌이켜보면 지난 2002년은 국가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우리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고, 최근 북한 핵파문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남북화해·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장정을 계속 했던 한해였다. 또한 제16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선출한 한해이기도 했다.

축산업계도 수입전면자유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설상가상으로 지난해는 66년만에 처음으로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축산업계의 혼신의 노력으로 박멸한 보람도 없이, 구제역이 다시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성지역을 시발로 하여 용인 및 충북 진천지역에서 재발되어 다시 각고의 박멸작업 끝에 다시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비발생국가로 인정받았다. 지난해는 구제역뿐만 아니라 돼지콜레라가 4월에 경기도 철원에서, 10월부터 경기 강화, 인천 서구, 경기 이천 지역에서 발생되어 지금도 전 축산업계가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박멸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식품위생과 관련하여 지난해는 1998년 축산식품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된 이후 선진적 축산식품 위생관리체계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도축장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가 국내에 축산물작업장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있어 커다란 진전이 있기도 하였으나, 도축장에서 HACCP 시행의 부진, 유통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의 어려움 등 많은 아쉬움도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의 축산물위생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금년 한해동안 축산물위생과 관련하여 농림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을 독자여러분들에게 개조식으로 밝혀 축산물위생분야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수의사들의 이해를 돕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다.



정부 축산물위생정책

1. 정책방향 및 시책

□ 목표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국민보건 증진

○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안전성이 보증된 고품질의 축산식품 생산으로 국내외 국제경쟁력 확보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축산업 발전 도모

□ 주요 시책

○ 원료생산단계에서 제품 최종판매단계까지 (farm to table)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 위생관리체계 구축

축산물작업장에 위생관리기준(SSOP),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등 선진적 위생관리 기법 적용으로 위생관리체계 선진화

- 축산식품이 병원성미생물 및 유해잔류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주요 오염경로인 가축사육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HACCP에 근거한 농가자율의 품질위생보증체계 (Voluntary Quality Assurance System) 시행

- 축산물 보관·운반·판매단계에서의 축산물 취급시 위생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02년 정부 및 업계 공동으로 개발한 "SSOP 운용지침 및 표준모델" 자율시행 확대

-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축산물 및 문제업소

중심의 위생지도·단속 강화 등 유통축산물에 대한 효율적 위생감시체계 구축

○ 2003. 7. 1일부터 모든 도축장에 대한 HACCP 제도 의무시행으로 도축단계에서의 HACCP 체계 완전구축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규제완화 및 선진화

○ 1998. 6.20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거 그간 유예되었던 닭, 오리, 사슴, 토끼,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 8개 가축에 대한 도축장 위생검사 규정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원만한 정착 유도

※ SSOP란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의 약자로서 축산물취급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축산물의 변질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전 및 작업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관리사항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매일 준수하는 위생관리기법의 하나로서 HACCP 시행의 토대가 됨.

※ HACCP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서 축산물작업장에서 작업과정중에 발생되어 공중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중점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 기법으로, 위해발생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제도임.

2. 2002년 주요 추진실적

가. 위생관리제도 선진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등)

○ SSOP, HACCP 의무적용을 법적으로 규정

- HACCP 시행의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미시행작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강화를 위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근거를 마련(2001.12.31)

- SSOP는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에서, HACCP는 도축장에서 의무적용

- SSOP 및 HACCP 미시행 작업장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30만원→100만원)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동법시행규칙 별표11)(2002. 8. 3)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법상 축산물의 범주에 "식용란"(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포함시켜 처음으로 법적으로 식용란에 대한 위생관리근거를 마련하였고(2001.12.31), 세부 위생관리기준을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2002. 8. 5)함에 따라 그간 국민 다소비식품이자 공중위생상 중요관리대상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위생관리를 받지 않았던 식용란에 대한 위생관리를 본격 시행 가능

○ 타조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중위생상 관리가 필요한 동물에 대한 정부의뢰검사(voluntary inspection)에 관한 법적 근거(법 제40조의 2) 마련

- 동 규정에 의거 타조, 오소리 및 뉴트리아와 같이 법상 가축은 아니나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가축외 동물에 대한 위생검사의뢰규칙 마련 가능

- 세부사항은 현행 "타조및타조고기위생검사의뢰규칙(농림부령)"을 "가축외동물및그고기

위생검사의뢰규칙(가칭)(농림부령)"으로 개정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현재 개정작업중임.

○ 동법시행규칙중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육거래기록 구비 의무규정을 추가하여 원산지단속, 위생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이 가능토록 함.

- 2001. 9.10일부터 한우와 수입쇠고기와의 동시판매가 시행됨에 따라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매입시 식육의 종류, 물량, 원산지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함.

- 동 조치는 2002. 1.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식품위해발생시 거래내역서 기록으로 효율적인 추적 및 조기회수가 가능해졌고, 수입 쇠고기·젓소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등 부정행위를 사전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됨.

○ 규제완화 및 선진국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유통중인 냉장육제품을 냉동하여 냉동육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

- 냉장육제품을 냉동으로 전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업(또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가 사전에 영업허가(또는 신고)를 한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신고)하고, 축산물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준수 필요

○ 축산물 보관·운반·판매단계에서 SSOP 시행지침 및 표준모델 마련 보급

- SSOP는 축산물의 변질 또는 공중위생상

위험요인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취급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 위생관리사항으로서 유통단계에 이의 적용으로 위생관리수준 향상 기대

- SSOP는 HACCP 시행의 토대로서 가축 사육농장에서의 품질보증체계(QA) 도입, 도축장 및 가공장에서의 SSOP 및 HACCP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Farm to Table에서의 선진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임.

나. 축산물작업장 HACCP 시행토대 구축

○ 도축장을 도축규모별(1일 도축실적기준)로 2000. 7. 1일부터 2003. 7. 1일까지 4개년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차등하여 모든 도축장에 HACCP를 의무적용토록 2002.12월말 현재 HACCP 적용은 도축장 숫자(56개소)로는 소·돼지도축장(40개소)은 전체의 37%, 닭도축장(16개소)은 전체의 30%이나, 도축물량 기준으로는 소가 50%, 돼지가 69%, 닭이 72%를 차지하고 있어 HACCP은 본격시행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음.

- ('00) 소 100두, 돼지 1000두 및 닭 10만수 이상 작업장 ⇒ ('01) 소 50, 돼지 500 및 닭 5만 이상 ⇒ ('02) 소 30, 돼지 300 및 닭 3만 이상 ⇒ ('03. 7) 모든 도축장

○ 도축장 HACCP 위생시설 및 컨설팅 자금 지원으로 도축업계에서의 HACCP 시행을 적극 지원

- 도축장 HACCP 시설자금 지원 : '99~'02(4년간) 40개소(140억원)

- 도축장 HACCP 컨설팅비용 보조 : '99~'02(4년간) 50개소(310백만원)

○ 축산물가공장에서의 HACCP 적용대상 품목을 국민다소비 축산식품을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HACCP 적용업소도 매년 증가

- 적용품목 : ('00) 8개 품목 ⇒ ('01) 9 ⇒ ('02) 13

- 적용품목 : 햄·소시지·포장육·양념육·분쇄가공육제품·우유·발효유·자연치즈·가공치즈·가공유·버터·저지방우유·아이스크림

- 적용업체 확대 : ('00) 31개 업소 ⇒ ('01) 37 ⇒ ('02) 51

- 축산물가공업체에서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업체 자체에 부합되는 HACCP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품 HACCP 적용매뉴얼」을 마련하여 유관업체 배포('02. 6)

○ HACCP 적용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군납, 학교급식, 단체급식, 대형유통업소 등에 HACCP 적용 축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협조 요청

○ 도축장의 HACCP 시행 준비실태 및 운용현황에 대한 객관적 점검을 위해 시·도 도축장에 대한 시·도 공무원간의 교차점검 실시

- HACCP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120여개 도축장에 대한 법적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SSOP),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처분(경고 22개소, 시설개수명령 57, 과태료 15, 영업정지(과징금) 9, 처분유예 14) 조치

○ 축산식품업계의 HACCP 시행 토대를 확대하고, 시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강화

- HACCP 교육기관(대한수의사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축산물 작업장의 영업자 종업원, 축산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HACCP 기본 및 전문 교육 실시
- 축산물작업장 HACCP 추진관련 대국민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배포(2만부)
- 업계관계자, 관계공무원등 HACCP 단기연수(국가행정전문연수원 농업연수부, 400명)
-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0회 이상 교육 홍보자료 게재 등

다. 축산물 위생관리수준 향상

○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대상물질 및 검사건수 확대

- 검사대상 물질수 : ('98) 30 → ('99) 44 → ('00) 45 → ('01) 73 → ('02) 75
- 검사건수 : ('98) 83천건 → ('99) 89 → ('00) 104 → ('01) 109 → ('02.9) 87
- 불합격율 : ('98) 0.01% → ('99) 0.15 → ('00) 0.07 → ('01) 0.16 → ('02.9) 0.14

○ 식육중 미생물 검사

- 검사대상 물질수 : ('98) 5 → ('99) 5 → ('00) 12 → ('01) 3 → ('02) 3

- 검사건수 : ('98) 18천건 → ('99) 20 → ('00) 47 → ('01) 120 → ('02.9) 91
- 불합격율 : ('98) 0.61% → ('99) 0.30 → ('00) 0.16 → ('01) 0.24 → ('02.9) 0.24

○ 원유검사공영화에 따른 1등급 비율 상향

- 참여율 : ('99) 65% → ('00) 85 → ('01) 100 → ('02) 100
- 1등급 비율(세균수 기준) : ('99) 88% → ('00) 90 → ('01) 90 → ('02) 93.5

4.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한 법령 개정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식육처리업 신설, 유기 축산식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기간 동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법령개정 필요사안 반영

○ 가축의동물및그생산물의퇴규칙(농림부령) 마련('03년 상반기)

- 타조, 오소리, 뉴트리아 등 가축의 동물의 도살 처리시 의뢰검사가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가축은 아닌 동물이라도 회망하는 경우에는 정부검사관의 위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식육안전성을 확보
- 축산물 작업장에서의 HACCP 운용체계를 과학화하기 위한 축산물 HACCP 고시 개정
- HACCP 적용작업장에서 HACCP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미생물학적 검사기준을 도입하여 적용

- HACCP 운용체계를 "정부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중앙정부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하드웨어중심에서 소프트웨어중심으로" 변경하여 HACCP 정책을 그간 적용작업장을 확대하는데에서 이제는 적용작업장이 실제로 HACCP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둠.

□ 축산물작업장 HACCP 체계 정착

○ '03. 7. 1부터 모든 소 돼지 닭 도축장에 HACCP 의무적용

- 미적용 도축장에 대한 위생감시활동 강화 및 행정처분 강력 시행

- HACCP 조기적용을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역담당관을 운영하여 해당 도축장의 HACCP 준비를 독려하고 애로사항 파악 및 필요한 기술적 지원 제공

○ HACCP 적용작업장 지정대상 축산물 가공품 13개 품목류에 대한 HACCP 자율적용 확대

○ 군납, 학교·단체급식업체 및 대형유통업체에 HACCP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여 HACCP 제품을 차별화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보다 더 찾을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HACCP 검증세부지침, 소규모 도축장용 HACCP 적용모델, HACCP 적용도축장에서의 도축검사관 검사지침, 정부위생당국 HACCP 적용작업장 세부감독지침 등 HACCP 적용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 마련

○ HACCP 홍보리후렛·포스터 배포 등 교육·홍보 강화

□ 농장단계에서부터 최종판매단계까지 선진적 위생관리체계 구축

○ 가축사육단계에 HACCP 개념에 근거한 농가 자율 시행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체계 도입하여 사육단계에서부터 위생개념을 도입하여 축산물에 오염될 수 있는 유해잔류물질, 병원성미생물 등 공중위생 위협요인에 대한 과학적 위생관리 실시

- 양돈협회 주관의 "청정돈육생산우수농장인증제"를 통해 돼지사육농가에서부터 우선 실시하고 이를 여타 가축으로 점차 확대 추진

○ 2002.12.17 유관기관·단체 등에 제공한 "축산물 보관·운반·판매단계에서의 위생관리 기준(SSOP) 시행지침 및 표준모델"을 관련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관련협회 등을 통하여 적극 유도하고 이의 시행상황을 점검

○ 한국농정연구센터에서 2002.11~2003. 6 (8개월간) 수행중인 "정부축산식품안전전략"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에 근거하여 축산물 위생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설정하여 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제도를 마련하고, 위생조직을 개편하며, 예산투입 등을 함으로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축산물 위생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 도축장 의무도축 적용대상 가축 확대시행
'03. 1. 1일부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부칙

제1조 및 동법시행령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으로부터 도축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축이 현행 4개 가축(소·돼지·양·말)에서 12개 가축으로 확대 시행

- 확대가축 : 사슴·토끼·닭·오리·거위·칠면조·매추리·펭

○ 의무도축대상 확대는 소비자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것만이 개방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며, 이를 위해 그동안 유예되었던 8개 가축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관리 실시

○ 의무도축 확대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농림부는 2003년 상반기중 8개 가축의 수급·도축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 및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새로이 추가되는 가축의 도축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이 필요할 경우 자금지원 검토

○ 금년 상반기중은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홍보·계도 및 보완을 하고, 2003. 7. 1일부터는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

- 단, 금년 상반기 의무도축 확대가축의 도축시행실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일부 가축에 대한 의무도축규정을 지속 유지키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 예정

□ 축산물위생감시지침에 따른 유통축산물에 대한 위생감시 강화

○ 2003년 위생감시지침의 중점목표를 공중위생상 위해축산물 유통사전예방 및 위해발견시 효율적인 회수(Recall)

○ 중대한 축산식품공중위생사고 발생 또는 발생우려시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축산물위생 위험긴급대처요령(Emergency Plan)에 따른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조하여 신속대처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본인은 축산물위생과 관련하여 지난 1년동안 농림부가 무엇을 하였고, 금년 한해동안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를 밝혀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글이 일선에서 축산물 위생업무 등을 담당하고 계시는 축산물위생관련 여러분들에게 업무 수행시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농림부등 정부위생당국이 추진하는 업무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식품 위생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인식되어야 할 것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섭취하는 시점에서 축산식품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축산물이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되어야 할 것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위생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축산물의 안전성 보증의 핵심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의사는 식품 위생관리분야에 있어 가장 선두에 있다. 식품중에 공중위생측면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축산식품이며, 축산식품에 있어 도축검사, 원유검사, 식육안전성 검사가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Farm to Table 단계에서 식품안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 집행하는 것 또한 수의사의 몫이다. 수의사는 과거에는 가축질병 방역분야에 주로 종사해 왔으나, 최근에는 졸업 수의사의 가장 많은 부분은 소동물병원 개업 등 동물복지(Animal Welfare) 분야 일 것이며, 둘째가 수의공중위생분야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서 이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된 환경에 따라 수의공중위생분야에 종사할 수의사 여러분의 숫자는 날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감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오년 양의 해가 밝았다. 올 한해는 순리를 순종하는 양처럼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되어나가길 바라며, 독자여러분들께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본다. **대 수**